

제1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5,140,500,000	257,025,000
일 반 회 계		4,405,120,000	220,256,000
특 별 회 계		735,380,000	36,769,000
	기 타 특 별 회 계	460,680,000	23,034,000
	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380,831,000	19,041,550
	치 수 사 업	22,991,000	1,149,550
	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	8,314,000	415,700
	광 역 교 통 시 설	2,424,000	121,200
	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46,120,000	2,306,00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74,700,000	13,735,000
	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	274,700,000	13,735,00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,285,3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